장 기 요 양 급 여

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방 문 요 양

해피투게더 노인복지센터
Happy Together Silver Daycare Center

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- 방문요양 -

해피투게더 노인복지센터

제 1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 1 조 (계약기간)

계약 시작일은 수급자(보호자)와 조율하여 정한 개시일로 하며, 계약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단, 수급자(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되 최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계약한다.

①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2 조 (계약목적)

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,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
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
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④ 기관 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, 이용수칙, 사고대비,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.

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(이하 "계약서"라 한다)로 체결하여야 한다. 계약서를 2 부 작성하여 1 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 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3 조 (계약내용)

계약서에는 계약기간, 계약목적,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,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 4 조 (서비스 제공시간)

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.

제 5 조 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)

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.

①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(월 총 이용료의 15%)을 부담한다. 단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하며,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60% 경감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%를, 40% 경감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%를 부담한다.

② 장기요양급여비용, 본인부담금, 급여 종류별 이용시간·횟수 등 매년 고시되는 세부 수가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르며, 고시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.

③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수급자(보호자)가 전액 부담하며, 그 부담 내역은 사전에 안내한다.

제 6 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)

1. 신원인수인의 권리

① 수급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.

② 수급자의 처우 개선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건의, 상담, 조언 및 생활 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③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
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
⑥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2. 신원인수인의 의무

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
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
③ 인적사항 및 신상변동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
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
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, 입·퇴원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
제 7 조 (계약의 해제)

1. 수급자(보호자)가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14 일 전에 구두·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. 다만 사망 시 혹은 응급 상황은 예외로 한다.

2.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(보호자)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
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
③ 3 회 이상의 본인부담금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
④ 수급자가 기관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

⑤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,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울 경우